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,
-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
-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
-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고,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2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법 제5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고,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3. 개정근거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생략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11.18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친절·공정)**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 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 (친절 · 공정) 공무원은 공사를</u> <u>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</u> <u>절,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</u> <u>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5조(친절 · 공정) ①</u> <u>공무원은 공</u> <u>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</u> <u>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</u> <u>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② <u>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</u> <u>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</u> <u>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③ <u>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</u> <u>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</u> <u>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